

##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정책 (전국 공통 / 경기도 / 수원시)

제 목	2023년 까지는	2024년부터 이렇게	근 거 (시행일)	더 궁금하면 (부서명/연락처)	구 분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정책	수원시 정책
<b>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</b>	○ 기준 중위소득 - 1인가구: 2,077,892원 - 4인가구: 5,400,964원	● 기준 중위소득 인상 - 1인가구: 2,228,445원(150,553원 ↑) - 4인가구: 5,729,913원(328,949원 ↑)		-	○		
	○ 의료급여 선정기준 - 1인가구: 831,157원 - 4인가구: 2,160,386원	● 의료급여 선정기준 인상 - 1인가구: 891,378원(60,221원 ↑) - 4인가구: 2,291,965원(131,579원 ↑)  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 추가 - 수급(권)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된 경우 ※ 단,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제외		복지정책과 031-228-3264	○		
	○ 생계급여 선정기준 ※ 기준중위소득의 30% 이하 - 1인가구 : 623,368원 - 4인가구 : 1,620,289원	●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 인상 ※ 기준중위소득의 32% 이하 - 1인가구: 713,102원(89,734원 ↑) - 4인가구: 1,833,572원(213,283원 ↑)		복지정책과 0031-228-2265	○		
	○ 교육급여 선정기준 - 1인가구 : 1,038,946원 - 4인가구 : 2,700,482원	● 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- 1인가구: 1,114,222원(75,276원 ↑) - 4인가구: 2,864,956원(164,474원 ↑)		경기도 복지국 (복지사업과) 031-8008-4326	○		

제 목	2023년 까지는	2024년부터 이렇게	근 거 (시행일)	더 궁금하면 (부서명/연락처)	구 분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정책	수원시 정책
재가의료급여 사업	※ 일부 지자체 시범사업 (하반기 전국 시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대상: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서,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대상자</li> <li>● 내용: 의료서비스 및 돌봄, 식사, 이동 서비스 등 제공</li> <li>※ 2024.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</li> </ul>	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42호 (2021. 5. 10.)	복지정책과 031-228-3969	○		
의료급여 수급자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	○ 다태아 임신·출산 시, 일괄 140만원 지원	● 다태아 임신·출산 시, 태아 1명당 100만원 지원	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81호 (2024. 1. 1.)	복지정책과 031-228-3264	○		
수원새빛돌봄 전체 동 확대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대상: 8개 시범동</li> <li>○ 지원대상: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</li> <li>○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준중위소득 75%이하 가구 연 100만원 한도 내 돌봄비용 지원, 그 외 자부담 이용가능</li> </ul> </li> <li>○ 서비스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본형 서비스(4대 11종): 방문가사, 동행지원, 심리상담, 일시보호</li> <li>- 주민제안형 서비스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업대상: 전체 동(44개동) 확대</li> <li>● 지원대상: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</li> <li>●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준중위소득 75%이하 가구 연 100만원 한도 내 돌봄비용 지원</li> <li>※ 그 외 자부담 이용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● 서비스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본형 서비스(4대 11종): 방문가사, 동행지원, 심리상담, 일시보호</li> <li>- 주민제안형 서비스</li> </ul> </li> </ul>	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(2023. 12. 29.)	돌봄정책과 031-228-2753			○
긴급복지 지원사업	○ 생계지원 기간: 1개월 (연장결정 필요)	● 생계지원 기간: 3개월 (연장결정 불필요)	긴급복지지원법 (2023. 12. 14.)	돌봄정책과 031-228-2439	○		

제 목	2023년 까지는	2024년부터 이렇게	근 거 (시행일)	더 궁금하면 (부서명/연락처)	구 분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정책	수원시 정책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생계지원 - 4인가구 1,620,200원</li> <li>○ 연료비 11만 원</li> <li>○ 금융재산 기준 - 6백만원 이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생계지원 금액 인상 - 4인가구 1,833,500원</li> <li>● 연료비 인상 15만 원</li> <li>● 금융재산 기준 인상 - 4인가구 11,729,000원(생활준비금 포함)</li> </ul>	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(2024. 1. 1.)	돌봄정책과 031-228-2439			
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	○ 생계지원 기간: 1개월 (연장결정 필요)	● 생계지원 기간 연장: 3개월 (연장결정 불필요)	긴급복지지원법 (2023. 12. 14.)	돌봄정책과 031-228-2439	○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생계지원 - 4인가구 1,620,200원</li> <li>○ 연료비 11만 원</li> <li>○ 금융재산 기준 - 1,200만원 이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생계지원 금액 인상 - 4인가구 1,833,500원</li> <li>● 연료비 인상 15만 원</li> <li>● 금융재산 기준 인상 - 4인가구 17,729,000원(생활준비금 포함)</li> </ul>	경기도형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(2024. 1. 1.)	돌봄정책과 031-228-2439			
여성폭력방지 시설 호봉제 도입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지원대상: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-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및 지원시설 등 5개소</li> <li>● 경기도 종사자 표준 호봉제 도입 - 보건복지부「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」 준용</li> </ul>	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(2024. 1. 1.)	여성정책과 031-228-2992		○	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국비)	○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, 추가아동양육비, 학용품비, 생계비 지원	● 기준중위소득 기준 완화 (60%→63%)	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, 제17조 (2024. 1. 1.)	여성정책과 031-228-2498	○		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	-	● 기준중위소득 63% 초과 100% 이하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가정에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10만 원 지원	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7조, 경기도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 제8조 (2024. 3. 1.)	여성정책과 031-228-2498		○	

제 목	2023년까지는	2024년부터 이렇게	근 거 (시행일)	더 궁금하면 (부서명/연락처)	구 분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정책	수원시 정책
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	○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,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, 자립지원촉진 수당 지원	● 0~1세 영아 양육 5만 원 추가 지원 (월 35만 원 → 월 40만 원)	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및 제17조 (2024. 1. 1.)	여성정책과 031-228-2498	○		
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(국비)	○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청소년부모 가족에게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	●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청소년부모 가족에게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 원 지원	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(2024. 1. 1.)	여성정책과 031-228-2498	○		
첫만남이용권	○ 출생 순위, 다태아 등 관계 없이 출생아동 200만원 바우처 지급	● 출생순위에 따라 금액 변경 - 첫째아 200만원 - 둘째아 300만원	2024년 첫만남 이용권 사업안내 지침 (2024. 1. 1.)	여성정책과 031-228-3219	○		
아이돌봄서비스	○ 시간당 이용료 11,080원	● 시간당 이용료 인상 11,630원 ● 신규 -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% 할인 - 0~1세 자녀 청소년부모·한부모 이용 요금 90% 지원	경기도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(2024. 1. 1.)	여성정책과 031-228-2496	○		
아이돌보미 독감예방접종비 지원	○ 3만원 지원(연 1회)	● 3만 5천원 지원(연 1회)	경기도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 (2024. 1. 1.)	여성정책과 031-228-2496		○	
방문형 긴급돌봄 강화	-	● 긴급돌봄(일시연계) 아이돌보미 추가수당(시간당 2천 원) 지급	경기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5조 (2024. 7월 예정)	여성정책과 031-228-2496		○	

제 목	2023년 까지는	2024년부터 이렇게	근 거 (시행일)	더 궁금하면 (부서명/연락처)	구 분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정책	수원시 정책
경기도 1인가구 정보제공 포털 구축	○ 경기도 홈페이지, 시·군 홈페이지, 가족센터 홈페이지 등 정보 개별 안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경기도 1인가구 정책 통합정보제공 포털 구축</li> <li>- 1인가구 정책홍보, 시군별 참여프로그램 등 정보제공</li> <li>- 포털(네이버, 다음)에서 “경기도 1인가구 포털” (<a href="https://www.gg.go.kr/1ingg">https://www.gg.go.kr/1ingg</a>) 검색</li> </ul>	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(2023. 12. 7.)	여성정책과 031-228-2496		○	
요양보호사 보수교육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대상: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</li> <li>● 시간: 2년마다 8시간 이상</li> <li>● 방법: 대면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</li> <li>● 면제: 자격시험 합격 후 2년까지</li> </ul>	노인장기요양보험법 (2024. 1. 1.)	어르신돌봄과 031-228-2578	○		
부모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모급여 지원</li> <li>- 대상: 수원시에 거주하는 0~23개월 영아</li> <li>- 지원금액 (0~11개월) 월 70만 원 (12~23개월) 월 35만 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부모급여 지원 확대</li> <li>- 대상: 수원시에 거주하는 0~23개월 영아</li> <li>- 지원금액 (0~11개월) 월 70만 원 → 100만 원 (12~23개월) 월 35만 원 → 50만 원</li> </ul>	아동수당법 제4조 (2024. 1. 1.)	아동돌봄과 031-228-3213	○		
장애아보육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	○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연 200만 원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교재교구비 지원 확대</li> <li>- 대상 : 장애아전문어린이집 → 장애아전문·통합어린이집</li> <li>- 지원금액 (전문) 연 200만 원 → 연 400만 원 (통합) 연 200만 원 &lt;장애반 3개 이상&gt;</li> </ul>	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 (2024. 3. 1.)	아동돌봄과 031-228-3214		○	

제 목	2023년 까지는	2024년부터 이렇게	근 거 (시행일)	더 궁금하면 (부서명/연락처)	구 분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정책	수원시 정책
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	○ 취학 전후(초등 저학년) 기초학습지원 - 기초 한글, 기초 수학, 읽기쓰기 등 학습지원	● 기초학습지원 대상 확대 - 초등 저학년 및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 (저학년) 한글, 수학, 읽기·쓰기 등, (고학년) 국어, 독서토론 등	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(2024. 1. 1.)	다문화정책과 031-228-2993	○		
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	-	●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- 대상: 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 가구의 7~18세 자녀 - 내용: 사례관리를 통해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, 독서실 이용, 온라인학습권 구매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- 지원금액: 초등학생 40만원, 중학생 50만원, 고등학생 60만원	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(2024. 1. 1.)	다문화정책과 031-228-2993	○		
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	○ 지원단가: 15,570원 (30분 단위: 7,780원) - 1인집중지원: 23,350원 - 2인그룹: 15,570원 - 3인그룹: 12,450원	● 지원단가 인상: 16,150원 (30분 단위: 8,070원) - 1인집중지원: 24,220원 - 2인그룹: 16,150원 - 3인그룹: 12,920원	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2024. 1. 1.)	장애인돌봄과 031-228-3704	○		
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:1 지원	-	● 대상: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담 제공 인력이 있는 제공기관 ● 내용: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낮 활 동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1:1 전담 제공인력을 배치한 제공기관에 집중적· 개별적으로 지원 ● 사업량: 10개소	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2024. 6. 1.)	장애인돌봄과 031-228-3704	○		

제 목	2023년 까지는	2024년부터 이렇게	근 거 (시행일)	더 궁금하면 (부서명/연락처)	구 분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정책	수원시 정책
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	○ 지원단가: 15,570원 (30분 단위: 7,780원) - 2인그룹: 15,570원 - 3인그룹: 14,010원 - 4인그룹: 12,450원	● 지원단가 인상: 16,150원 (30분 단위: 8,070원) - 2인그룹: 16,150원 - 3인그룹: 14,530원 - 4인그룹: 12,920원	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2024. 1. 1.)	장애인돌봄과 031-228-3704	○		
장애인활동지원	○ 활동보조 급여비용 15,570원 ○ 방문목욕 급여비용 82,160원 ○ 방문간호 급여비용 39,440원	● 활동보조 급여비용 16,150원 ● 방문목욕 급여비용 84,670원 ● 방문간호 급여비용 40,760원	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(2024. 1. 1.)	장애인돌봄과 031-228-2575	○		
장애인연금	○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- 단독가구 122만 원 - 부부가구 195만 2천원 ○ 장애인연금 지급액 - 기초급여 월 323,180원 - 부가급여 월 20,000원 ~ 403,180원	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인상 - 단독가구 130만 원 - 부부가구 208만 원 ● 장애인연금 지급액 인상 - 기초급여 월 334,810원 - 부가급여 월 30,000원 ~ 424,810원	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3호 (2024. 1. 10.)	장애인돌봄과 031-228-2244	○		
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	○ 출산(유산·사산)비용 지원 -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	● 출산(유산·사산) 지원 확대 - 태아 1인 기준 인상 120만 원	장애인복지법 (2024. 1. 1.)	장애인돌봄과 031-228-2244	○		
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확대	○ 사업량: 7,000명 ○ 지원액: 월 5만 원	● 사업량 : 10,000명(3,000명 ↑) ● 지원액 : 월 10만 원*(5만 원 ↑) * '24년 하반기부터 적용(예정)	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조례 (2024. 7. 1.)	장애인돌봄과 031-228-2265		○	
장애인 누립통장 지원 확대	○ 대상연령: 19~21세 ○ 최대 3,600명 지원	● 대상연령 확대: 19~23세(2세 ↑) ● 최대 6,000명(2,400명 ↑) 지원	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조례 (2024. 1. 1.)	장애인돌봄과 031-228-2217		○	

제 목	2023년 까지는	2024년부터 이렇게	근 거 (시행일)	더 궁금하면 (부서명/연락처)	구 분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정책	수원시 정책
중증장애인 경기도 장애수당	○ 장애수당 월 4만 원	● 장애수당 인상 월 6만 원	장애인복지법 (2024. 1. 1.)	장애인돌봄과 031-228-2244		○	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	○ 출산지원금 - 심한 장애 100만 원 -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 원	● 출산(유산·사산)지원금 확대 - 장애 정도 상관없이 출산(유산·사산) 1인당 100만 원 지급	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(2024. 1. 1.)	장애인돌봄과 031-228-2244			○
장애아가족 양육지원	○ 연 960시간 지원	● 연 1,080시간 지원(120시간↑)	장애아동복지지원법 (2024. 1. 1.)	장애인돌봄과 031-228-3304	○		
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	○ 교부품목 38종 ○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 원칙	● 교부품목 42종 ● 연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지원 가능 (단, 200만 원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제품 지원)	장애인복지법 (2024. 1. 1.)	장애인돌봄과 031-228-3304	○		
수원특례시 발달장애 종합정보시스템 「새빛이음」	-	● 홈페이지 주소 <a href="https://www.suwon.go.kr/baldal">https://www.suwon.go.kr/baldal</a> ● 주요내용 발달장애 정보, 복지 서비스, 시설 검색, 새소식 알림 등	2023. 12. 28.(목) 서비스 개시	장애인돌봄과 031-228-3336			○